

의안번호	2217239
의 퇴 인	이용우의원
회 답 일	2026.3.24.
추 계 번호	26D1220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라 함)을 둠 -중수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지역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지역중수청”이라 함)을 둘 수 있으며, 중수청·지역중수청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2	안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중수청에 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중수청장”이라 함)을 두며, 보수 및 대우는 차관의 예에 준함	의무규정
3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추천위원회)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추천위원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의무규정
4	안 제8조(차장), 안 제10조(지역중수청장)	-중수청에 차장을 둠 -지역중수청에 지역중대범죄수사청장(이하 “지역중수청장”이라 함)을 둠	의무규정
5	안 제9조, 안 제11조(직제)	-중수청의 직제는 국·부 또는 과로 함 -중수청 및 지역중수청의 직제, 분장사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6	안 제12조 ~안 제15조(수사관 등)	-「형사소송법」 제197조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수청에 수사관을 두며, 수사관의 계급은 중수청장, 차장, 수사1급부터 수사9급까지로 함	의무규정
7	안 제20조(정원)	-중수청장, 차장, 수사관을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하며, 수사관의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8	안 제25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중수청의 행정에 관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9	안 제27조(불송치심의위원회)	-불송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고소인, 고발인 등이 중수청 불송치심의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의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불송치심의위원회를 두고,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의무규정
10	안 제28조(수사인권보호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와 수사 공정성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 중수청에 수사인권보호관을 두고,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함 -수사인권보호관의 자격,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조(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5조(중대범죄수사청장)	
3	안 제7조(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	
4	안 제8조(차장), 안 제10조(지역중수청장)	
5	안 제9조, 안 제11조(직제)	
6	안 제12조~안 제15조(수사관 등)	
7	안 제20조(정원)	
8	안 제25조(중대범죄수사청 직원)	
9	안 제27조(불송치심의위원회)	
10	안 제28조(수사인권보호관)	

2. 상세 사유

- 중수청 설치(안 제4조), 중수청 및 지역중수청 직제(안 제9조 및 안 제11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와 그 관련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하여 보수 및 대우를 차관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차장 및 지역중수청장의 직급, 직제와 정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조직구조, 분장사무 및 조직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또한 제정안은 기존의 검찰청이 수사를 담당하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범죄, 방위사업범죄, 내란·외환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수사권한을 신설되는 중수청으로 이관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존 검찰청의 조직 재설계 및 인력 조정을 고려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임

□ 중수청 설치와 관련하여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중수청 설치 법안 제정 이후 기관 구성에 관한 핵심 사항들이 정해지면 중수청 조직 및 인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중수청 관련 예산은 현재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 2026년도 검찰청 예산을 활용하고 필요시 예비비를 편성하겠다는 입장임

- 참고로, 2026년 검찰청 예산은 1조 2,893억원¹⁾이며, 정부 예비비편성액은 4조원²⁾임

□ 2025년 기준 검찰청 수사관 1인당 직급별 보수는 다음 표와 같음

[표] 수사관 및 공무원의 1인당 직급별 보수(2025년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연봉액	연봉 외 급여			합 계
		직급보조비	정액급상비	가족수당	
수사관 1급(고위공무원단)	92,981	9,000	1,680	480	104,141
수사관 2급(고위공무원단)	85,565	7,800	1,680	480	95,525
수사관 3급(공안직)	78,007	6,000	1,680	480	86,167
수사관 4급(공안직)	69,253	4,800	1,680	480	76,213
수사관 5급(공안직)	59,762	3,000	1,680	480	64,922
수사관 6급(공안직)	51,163	2,220	1,680	480	55,543
수사관 7급(공안직)	43,399	2,160	1,680	480	47,719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 8급(공안직)	35,936	2,100	1,680	480	40,196
수사관이 아닌 수사공무원 9급(공안직)	30,593	2,100	1,680	480	34,853

주: 1. 각종 수당 중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 1인만 적용하고, 연가보상비 등은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2. 1~4급 20호봉, 5~6급 18호봉, 7급 15호봉, 8급 12호봉, 9급 10호봉 기준(성과급 지급 시 적용되는 호봉 기준)

자료: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 “검찰운영(1333)” 단위사업에 138,187백만원, “검찰업무정보화(1334)” 단위사업에 41,918백만원, “수사지원 및 역량강화(1335)” 단위사업에 125,049백만원, “공판활동지원(1337)” 단위사업에 52,612백만원, “검찰청운영인건비(총액)”(7002-101) 세부사업에 883,665백만원, “검찰청운영 기본경비(총액)”(7018-202) 세부사업에 31,524백만원, “검찰청운영 기본경비(7018-252)” 세부사업에 16,29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 4조원 중 재해대책비, 인건비, 전염병 대책, 정부조직개편 등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편성된 예비비는 3조 2천억원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상욱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상욱	02-6788-4673	flyhigh@assembly.go.kr